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
----------	-----

발의년월일 : 2006. 11 .

발 의 자 : 유천호 의원의외 8인

□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중에서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에 대한 구성, 기능, 회의 등을 보완하고 유물구입시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유물구입이 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문을 제1장부터 제7장으로 분류 구분함
 - 총칙, 전시실, 운영위원회, 심의회, 유물 수집, 이용 및 대여, 보칙
- 적용의 범위를 폐지함(안 제2조)
 - “박물관과 소속기관”을 폐지하여 박물관 자체에 대하여만 적용
-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 구성 및 기능 등(안 제17조 ~제19조)
 - 분야별로 3인이상 ,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임기는 1년 이내로 함.
 - 유물에 대한 고증과 감정을 하도록 함.
 - 관장의 의뢰에 대하여 자문을 함.
 - 경매유물은 심의회에서 응찰 유물을 선정하도록 함.
- 감정평가서 첨부 및 경매유물 응찰 여부 결정(안 제21조)
 - 매도희망금액(매도자)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 감정서를 첨부함
 - 경매유물은 관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명 다음(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고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 다음에 “제2장 전시실”을 삽입한다.

제10조 다음에 “제3장 운영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6조 다음에 “제4장 심의회”를 삽입한다.

제17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제20조, 제21조, 제22조로 한다.

제17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심의회 구성) ①제12조제6항에 의한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는 분야별로 3인이상으로 하되,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각 분야별 박물관 유물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심의회 기능) ①위원은 전시·수장유물과 구입유물에 대하여 고증 및 감정을 한다.

②관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국내·외 경매유물은 심의회에서 응찰 유물을 선정한다.

제19조(회의 등) ①관장은 구입할 유물 및 소장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9조(중전 제16조) 다음에 “제5장 유물 수집”을 삽입한다.

제21조(중전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자료구입) ①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유물은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도 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진품을 평가하는 감정서 및 유물 시가 감정을 함께 하는 감정평가서를 발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경매유물(해외경매를 포함한다)은 심의회와 실물평가 결과에 따라 관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④자료의 구입은 시보 고시·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제23조 내지 제28조로 한다.

제25조(종전 제22조) 다음에 “제6장 이용 및 대여”를 삽입한다.

제26조(종전 제23조) 다음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u>인천광역시립박물관</u>(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시설의 범위는 <u>박물관과 소속기관</u>을 포함한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u>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 「<u>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u>」 ----- -----<u>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u>----- ----- -----.</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2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전시실</p> <p>제10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운영위원회</p> <p>제16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심의회</p>

<신 설>

제17조(심의회 구성) ①제12조제6항에 의한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는 분야별로 3인이상으로 하되,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각 분야별 박물관 유물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심의회 기능) ①위원은 전시·수장유물과 구입유물에 대하여 고증 및 감정을 한다.
②관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③국내·외 경매유물은 심의회에서 응찰 유물을 선정한다.

<신 설>

제19조(회의 등) ①관장은 구입할 유물 및 소장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6조 (생략)

<신 설>

제19조

제5장 유물 수집

제17조 (생략)

제18조(자료구입) ①시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
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심의회 위원들의 감
정을 거쳐 구입한다.

<신 설>

<신 설>

②자료의 구입은 시보 고시·홈페
이지 공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
칙으로 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생략)

제21조 (생략)

제20조

제21조(자료구입) ①시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
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유물은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도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진품을 평가하는 감정서
및 유물 시가 감정을 함께 하는
감정평가서를 발행할 수 있는 외
부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③경매유물(해외경매를 포함한다)
은 심의회의 실물평가 결과에 따
라 관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절차
를 준수한다.

④자료의 구입은 시보 고시·홈페
이지 공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2조 (생략)

〈신 설〉

제23조 (생략)

〈신 설〉

제24조 (생략)

제25조 (생략)

제25조

제6장 이용 및 대여

제26조

제7장 보칙

제27조

제28조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문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 계 법 령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 2005-09-26 조례 제38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는 박물관과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제3조(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
 3.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② 시장은 지방시찰단 또는 관공서·학교·기타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4조(관람·대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대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2. 대표시간 ; 09:00부터 17:30까지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대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무료관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민·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3.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6.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9.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관람권) ①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정신 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어린이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관람자 준수사항) 전시실 관람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열품에 손을 대지 말 것
2. 허가 없이 진열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지 말 것. 다만, 연구의 목적으로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 또는 거대한 물품을 휴대하지 말 것
4. 박물관 안에서는 흡연 또는 기타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
5.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박물관운영위원회) 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향토사와 전통문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계, 예술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예연구실장이 된다.

⑥자료의 수집·전시·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안에 박물관자료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향토사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소속 기관설치,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제16조(필요경비 지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박물관자료의 정의 등) ①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발굴·채집·구입·이관·기증·기탁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②자료의 고증·감정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관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소집한다.

③자료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18조(자료구입) ①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한다.

②자료의 구입은 시보 고시·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자료기증) ①시장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자료기탁) ①시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②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시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기탁받은 자료는 박물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④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자료로 처리한다.

⑤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자료로 처리한다.

제21조(자료관리) ①시장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자료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④시장은 자료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장고 관리) ①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이용과 대여) ①자료의 이용이라 함은 박물관자료에 대해 모사·사진촬영·복제·복사·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장은 박물관 운영과 소장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료의 구입, 기증, 기탁등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 표]

박물관 관람료		
구 분	요 율 구 분	관 램 료
개 인	1.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자	무 료
	2. 군 경	200원
	3. 어 른	400원
단 체 (20인 이상)	1. 군 경	100원
	2. 어 른	200원
박물관 자료 이용료		
구 분	수 량	이 용 료
사 진 촬 영	1 점	10,000원
탁 본	1 점	10,000원
모 조(실 측)	1 점	10,000원
모 사(실 측)	1 점	10,000원
사진원판사용	1 점	5,000원